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제1장 개요

I. 총 괄	1
II. 세입세출예산안	3
1. 세입예산안	3
2. 세출예산안	5
III. 성과계획서	13
1. 임무와 비전	13
2. 목표 및 과제 현황	13
IV. 성인지 예산	15

제2장 검토의견

1.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행사의 편성 비목 조정 필요	16
2.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PbD 인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	19
(1) 예산 세부사업구조 개편 필요	20
(2) PbD 인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2
3.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장소 임차료 감액 필요	24

4.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의 사전 준비 철저 필요 등	28
(1)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의 사전 준비 철저 필요	30
(2)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7
5.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타 사업과의 차별화 및 보호위원회 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43

제1장 개요

I. 총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 한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됨.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11억 2,400만원(27.1%) 증가한 521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46억 300만원(7.0%) 증가한 704억 4,700만원임.

〈2026년도 개인정보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 세입예산안	41,010	41,010	52,134	11,124	27.1
○ 일반회계	41,010	41,010	52,134	11,124	27.1
□ 세출예산안	64,548	65,844	70,447	4,603	7.0
○ 일반회계	64,548	65,844	70,447	4,603	7.0

(자료: 개인정보위)

- 2026년도에 개인정보위는 신뢰받는 AI 시대에 부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임.

〈2026년도 주요 추진 과제〉

□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 신기술·신산업 환경에서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구축을 통한 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이력 분석 등 마이데이터 지원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안정적 마이데이터 지속 지원
- 디지털 경제 시대 개인정보 핵심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AI·자율주행·블록체인 등 핵심분야별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 및 법·정책·기술을 겸비한 개인정보 핵심인재 양성 추진

□ 선제적인 개인정보 이슈 대응

- 개인정보 유·노출 게시물 탐지·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신속 대응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한 조사·분석 강화로 신속·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 대응
-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피처분자의 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 비용

□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AI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글로벌 차원 프라이버시 규범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 및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 대응 네트워크 강화

(자료 : 2026년도 개인정보위 성과계획서)

II. 세입세출예산안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입예산안은 521억 3,400만원임.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합 계	32,366	41,010	41,010	52,134	11,124	27.1
기타재산이자수입	324	64	64	129	65	101.6
과태료	612	790	790	746	△44	△5.6
과징금	29,768	38,800	38,800	49,909	11,109	28.6
위약금	335	1	1	1	-	-
가산금	3	23	23	18	△5	△21.7
기타경상이전수입	1,323	1,330	1,330	1,329	△1	△0.1
면허료및수수료	-	1	1	1	-	-
기타잡수입	-	1	1	1	-	-

(자료 : 개인정보위)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출연금 등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발생이자 반납금과 관련한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억 2,900만원이 편성됨.

○ 과태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으로, 2026년도에는 실제 세입 징수 여건 등을 감안하여 7억 4,600만원이 편성됨.

-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징금 수입으로, 2026년도에는 실제 세입 징수 여건 등을 감안하여 499억 9백만원이 편성됨.
- 위약금은 계약 의무 불이행시 발생하는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만원이 편성됨.
- 가산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800만원이 편성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과년도 지출반납,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납, 소송비용 회수액 등과 관련한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3억 2,900만원이 편성됨.
- 면허료및수수료는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와 관련한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만원이 편성됨.
- 기타잡수입은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과 관련한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만원이 편성됨.

2. 세출예산안

1) 총 괄

□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출예산안은 704억 4,700만원으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658억 4,400만원 대비 46억 300만원(7.0%)이 증액 편성됨.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추경(A)			
합 계	65,067	64,548	65,844	70,447	4,603	7.0
□ 인건비	14,053	14,592	14,592	15,360	768	5.3
□ 기본경비	2,107	2,408	2,408	2,520	112	4.7
□ 사업비	48,907	47,548	48,844	52,567	3,723	7.6

(자료 : 개인정보위)

2) 인건비

□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153억 6,000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45억 9,200만원 대비 7억 6,800만원(5.3%) 증가함.

○ 2026년도 인건비 예산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및 직제상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임.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인건비 합계	14,053	14,592	14,592	15,360	768	5.3
보수(110-01)	13,524	14,060	14,060	14,580	520	3.7
기타직보수(110-02)	447	422	422	664	242	57.3
연가보상비(110-05)	82	110	110	117	7	6.4

(자료 : 개인정보위)

3) 기본경비

-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25억 2,0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24억 800만원 대비 1억 1,200만원(4.7%)이 증액 편성됨.
- 2026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는 6개사업에 6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는 6개사업에 18억 2,200
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기본경비 합계	2,107	2,408	2,408	2,520	112	4.7
위원회총액기본경비(기획조정관)	25	24	24	29	5	20.8
위원회총액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	16	16	16	22	6	37.5
위원회총액기본경비(조사조정국)	56	66	66	72	6	9.1
위원회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10	12	12	15	3	25.0
위원회총액기본경비(대변인)	6	7	7	8	1	14.3
위원회총액기본경비(기관운영)	457	524	524	552	28	5.3
위원회기본경비(기획조정관)	261	285	285	335	50	17.5
위원회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	194	250	250	268	18	7.2
위원회기본경비(조사조정국)	196	226	226	231	5	2.2
위원회기본경비(운영지원과)	178	274	274	270	△4	△1.5
위원회기본경비(대변인)	107	143	143	152	9	6.3
위원회기본경비(기관운영)	602	581	581	566	△15	△2.6

(자료 : 개인정보위)

4) 주요사업비

□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525억 6,700만원으로 2025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37억 2,300만원(7.6%)이 증가함.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본 예산	추경(A)		(B-A)	(B-A)/A
주요사업비 합계	48,908	47,548	48,844	52,567	3,723	7.6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2,017	1,938	1,938	1,888	△50	△2.6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4,232	3,714	3,714	3,714	-	-
개인정보 교육 지원	1,339	1,134	1,134	1,284	150	13.2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31	531	531	150	△381	△71.8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441	2,376	2,376	1,442	△934	△39.3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3,328	3,564	3,564	6,456	2,892	81.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7,650	6,050	6,050	5,364	△686	△11.3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7,446	6,045	6,045	6,176	131	2.2
신기술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	1,500	1,500	2,660	1,160	77.3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	-	-	6,138	6,138	순증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 개발(R&D)	-	-	-	1,482	1,482	순증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	-	-	3,000	3,000	순증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R&D)	5,883	5,188	5,188	-	△5,188	순감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1,228	2,000	2,000	-	△2,000	순감
개인정보침해방지	9,353	7,486	8,782	7,265	△1,517	△17.3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	1,596	1,596	350	△1,246	△78.1
위원회송무지원	397	420	420	800	380	90.5
위원회운영지원	1,955	2,020	2,020	2,162	142	7.0
위원회법무지원	95	65	65	65	-	-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2,013	1,921	1,921	2,171	250	13.0

(자료 : 개인정보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5,000만원(△2.6%) 감소한 18억 8,800만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은 민간 사업자 등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한 37억 1,400만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 교육 지원’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종사 인력 업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과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1억 5천만원(△13.2%) 감소한 12억 8,400만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 발굴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3억 8,100만원(△71.8%) 감소한 1억 5,000만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해외 감독기관 간 협력과 국외 개인정보보호 규제대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9억 3,400만원(△39.3%) 감소한 14억 4,200만원이 편성됨.

-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기술지원 및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28억 9,200만원(81.1%) 증가한 64억 5,600만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은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주체 동의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6억 8,600만원(△11.3%) 감소한 53억 6,400만원이 편성됨.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은 이종 산업·분야 간에도 데이터가 막힘없이 이동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개인정보 전송요구, 전송 이력 확인 및 중단 요청, 서비스 검색 등 마이데이터 쉐어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1억 3,100만원(2.2%) 증가한 61억 7,600만원이 편성됨.
-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AI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및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11억 6,000만원(77.3%)이 증가한 26억 6,000만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사업은 개인정보 안전활용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61억 3,8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 개발(R&D)’ 사업은 글로벌 데이터 환경과 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 및 표준화 기반 구축·확산으로 개인정보 안전활용 시대 선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14억 8,2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사업은 AI 성패를 좌우하는 개인정보 안전활용을 기술·법·경영 등 다각도로 접근·대응할 수 있는 고급인재 양성, 현장애로 해소 및 글로벌 기술·정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30억원이 신규 편성됨.
- ‘개인정보침해방지’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대응하고,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2억 2,100만원(△3.0%) 감소한 72억 6,500만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은 신속·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 분석 및 법 집행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기반 조사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12억 4,600만원(△78.1%) 감소한 3억 5,000만원이 편성됨.
- ‘위원회송무지원’ 사업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피처분자의 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쟁송, 헌법소원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에는 전년대비 3억 8,000만원(90.5%) 증가한 8억원이 편성됨

- ‘위원회운영지원’ 사업은 법령상 운영하는 회의체 운영, 개인정보보호 정책연구 및 포럼, 세미나 등 정책 혁신활동 행정지원인력 운영 등 위원회 업무 운영,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1억 4,200만원(7.0%) 증가한 21억 6,200만원이 편성됨.
- ‘위원회법무지원’ 사업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법률포탈 사이트를 통하여 판례, 법률 해석자료 등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한 6,500만원이 편성됨
- ‘위원회정보화지원’ 사업은 개인정보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교육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2억 5,000만원 증가한 21억 7,100만원이 편성됨

III. 성과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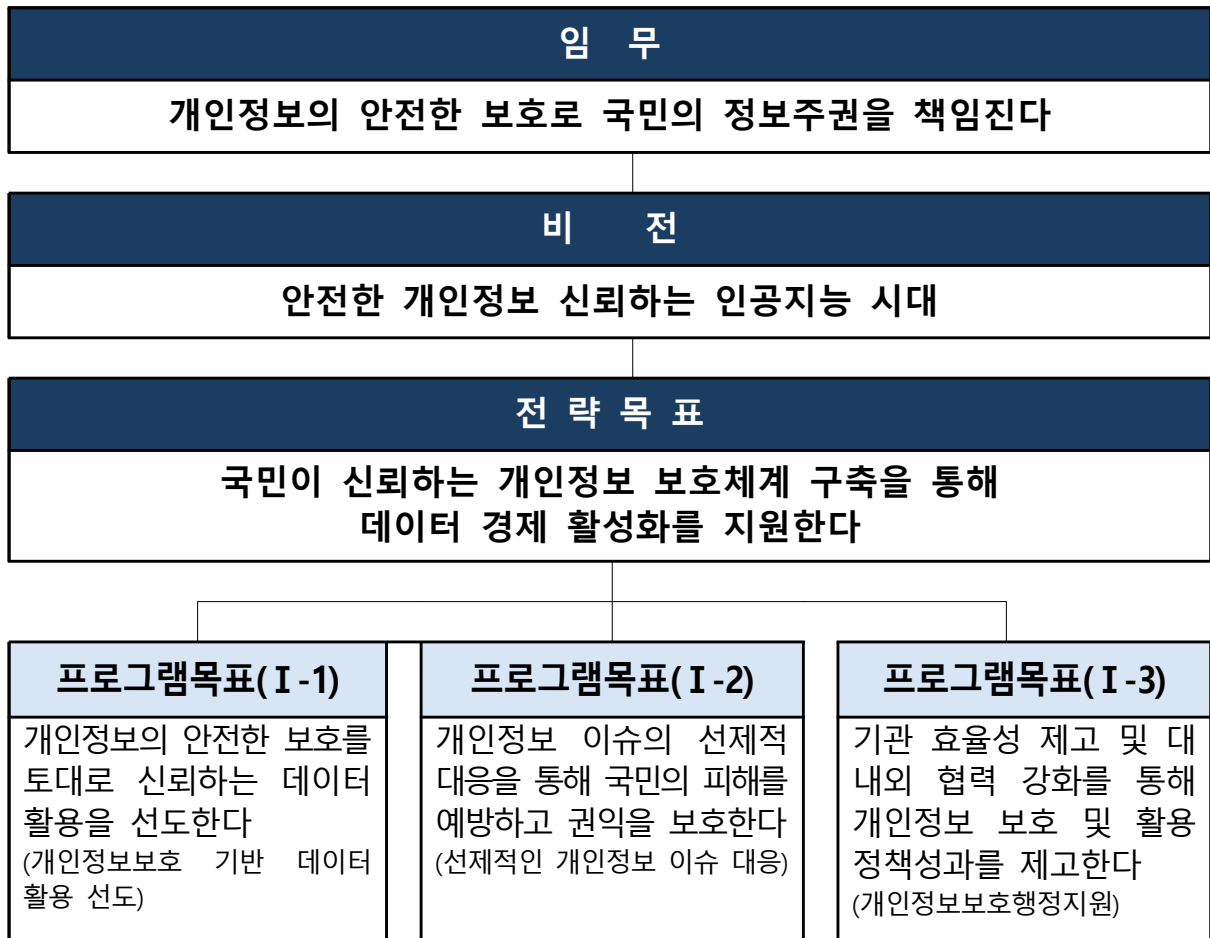
1. 임무와 비전

- 개인정보위는 2026년도 임무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로 국민의 정보주권을 책임진다’로 설정하였고, 비전을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인공지능 시대’로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전략목표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정책성과를 제고한다’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2026년도 개인정보위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자료: 개인정보위)

○ 프로그램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단위 사업은 5개임.

〈2025년도 개인정보위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1	3	5	18

프로그램명	성과계획
	단위사업명
전략목표 I.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I-1.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개인정보보호강화 (1031)
	개인정보활용지원 (1032)
	개인정보보호연구 (1033)
프로그램목표 I-2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선제적인 개인정보 이슈 대응	개인정보이슈대응 (2034)
프로그램목표 I-3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정책성고를 제고한다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 (7041)

(자료: 개인정보위)

IV. 성인지 예산¹⁾

☐ 개인정보위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음.

1) 성인지 예산서: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제2장 검토의견

1.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²⁾: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행사의 편성 비목 조정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개발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국가승인 통계를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 성과를 홍보·공유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0만원(△2.6%) 감소한 18억 8,8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2,017	1,938	1,888	△50	△2.6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발 지원	578	478	478		
-개인정보보호 국가승인 통계	485	500	450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 공유	174	180	181		
-개인정보보호 정책 운영지원	780	780	779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

2) 검토의견

- 이 중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 공유’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날 및 개인정보 보호주간 행사 등을 추진함.
- 그런데 동 사업의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보호위원회는 정책 홍보 행사(개인정보보호의 날, 개인정보보호주간) 관련 예산을 모두 일반용역비(210-14)³⁾로 편성하고 있음.
- 이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각각 금융의 날, 회계의 날, 소비자의 날 행사를 위한 예산을 일반수용비, 임차료, 사업추진비, 일반용역비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하고 이는 것과 대비됨.

3) 일반용역비(210-14) : 행사대행 등 기타 일반 업무의 대행 용역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기획재정부)

〈타 부처 유사사업 예산 편성 내역과 비교〉

부처	정책성과 공유 사업	편성내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중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행사	<90.7백만원> 일반용역비 90.7백만원
금융위원회	금융의 날	<90백만원> 일반수용비(심사수당, 기념품) 13.3백만원, 임차료 30백만원, 일반용역비 45백만원(행사준비, 홍보물 제작), 국내여비 0.8백만원, 사업추진비 0.9백만원
금융위원회	회계의 날	<77백만원> 일반수용비 6.4백만원, 임차료 30백만원, 일반용역비 38백만원, 국내여비 0.8백만원, 사업추진비 1.8백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선진소비자정책 추진사업 중 소비자의 날 행사	<43백만원> 일반수용비 1백만원, 일반용역비 39백만원, 사업추진비 3백만원

(자료: 각 부처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

□ 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 등이 2023년 까지 출연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24년부터 직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업출연금 편성 구조를 준용하여 행사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통합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함.

□ 정책성과 공유행사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이 예산안 편성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출연사업을 직접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한 취지⁴⁾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행사 예산을 비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통제력 강화, 책임성 확보 등

2.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⁵⁾: PbD 인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은 차세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8,100만원(△71.8%) 감액된 1억 5,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31	531	150	△381	△71.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2025년까지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해당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개발 지원사업’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2026년 예산안부터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개인정보 교육 지원(1031-302)” 사업으로 이관함.

5)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1031-304)

2) 검토의견

(1) 예산 세부사업구조 개편 필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사업이 타 세부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사업에는 신기술개발지원 사업만 남게 되었음.

○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은 ①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⁶⁾ 등을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보급사업과 ② 기술개발과제기획 및 평가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스타트업 정보보호 성장기업 도약” 사업⁷⁾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⁸⁾에 따라 2026년 ①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보급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됨.

○ 이에 따라 2026년 동 사업 예산안에는 기술개발 정책연구 및 과제 기획 명목으로 1억 5,000만원만 편성되었음.

6)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을 발굴·지원하여 개인정보 안전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회의 우수 기술로 선발된 상위 기업에게 시장진출을 위한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

7) 정보보호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함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정보보호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사업 분야 및 방향에 적합한 맞춤형 멘토링 매칭, 투자유치 및 IR교육 등 사업화를 전반적으로 지원함

8)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 2023. 9.

〈사업 내용 변경 사항〉

내역사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개인정보보호 신기술개발지원	①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보급: 450백만원	① <전액 감액 편성> * 타부처 사업과 유사·중복으로 폐지
	② 기술개발 과제기획 및 평가위원회 운영 등: 81백만원 * PbD 시범 인증	② 기술개발 정책연구 및 과제 기획 등: 150백만원 * PbD 시범 인증 품목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가명·익명처리 전문가 교육: 334백만원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99백만원	- * 개인정보 교육지원사업으로 이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편, 보호위원회는 ② 기술개발과제기획 및 평가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⁹⁾) 인증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PbD 시범 인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PbD 시범 인증¹⁰⁾ 사업은 개인정보 처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보호위원회가 PbD 인증서 및 인증마크¹¹⁾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26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인증 대상 제품군을 확대하여 동일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9)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10) ▲(인증기준) 4개의 인증영역 총 71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인증절차) 신청접수 → 제품 선정 → 인증시험(㈜한국IT평가원) → 인증서 부여

▲(인증체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험·인증 수행

11)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마크>



‘PbD’ 이니셜을 각각의 개인으로 묘사하고 전체적 형상은 방패로 표현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을 강조

□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주요사업이 이관 또는 폐지됨에 따라 PbD 인증
 시범사업만 남게 되었으며, 현재 그 외 다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
 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동 사업을 PbD 인증 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PbD 인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되
 고 있어 PbD 인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 법령상
 PbD 인증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이 시범 운영 중인 상황임.

〈PbD 시범 인증 사업 경과〉

- ('22년)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조사 및 PbD 인증항목 개발
- ('23년) 3종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추진
 - (적합) 1개 제품(가정용 CCTV SK윌더스(주))
 - (부적합) 3개 제품(취약점 보완 불가로 미인증)
- ('24년) 4종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추진 및 인증마크 확정(전액 위원회 예
 산, 사업자 부담 없음)
 - (적합) 3개 제품(로봇청소기 삼성전자㈜,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 ㈜엔트랩, 스마트 경로
 당 키오스크 ㈜블록오디세이)
 - (부적합) 1개 제품(취약점 보완 불가로 미인증)
 - (인증마크) 인증 제품에 인증서 수여 및 인증마크 부착
- ('25년) 홈 카메라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 중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현재 시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2026년에는 시범 인증 4년차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PbD 인증제 도입 및 확산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¹²⁾: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장소 임차료 감액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 감독기관과 협력하고, 해외 주요 국외 개인정보보호 법제 강화 추세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 대상 규제대응을 지원하며, 동등성 인정¹³⁾ 및 국외이전 인증제도¹⁴⁾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3,400만원(△39.3%) 감소한 14억 4,2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 GPA¹⁵⁾ 서울 총회 개최를 위해 일시적으로 증액되었던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예산이 예년 수준으로 조정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임.

12)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1031-305)

13) 동등성 인정: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국내(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인정하는 제도(「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 인정받은 대상국으로 개인정보 이전시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국내에서의 이전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이전 및 처리 가능.

14) 국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호위원회로부터 인증받은 제도

15) 미, 영, 일, EU 등 전 세계 95개국 148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	1,442	2,376	1,442	△934	△39.3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597	1,746	571	△1,175	△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503	315	552	237	△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342	315	319	4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사업은 글로벌 개인정보 정책 동향을 연구하고,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규제 대응을 지원하며, 국외 이전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Cross Border Privacy Rules, CBPR,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를 운영하는 사업임.

○ 그 일환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심의·의결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¹⁶⁾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1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2.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 국외이전전문위원회¹⁷⁾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1) 국외이전 승인 2) 동등성 인정 3)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는데, 현재는 동등성 인정을 위한 평가 기능만 수행하고, 국외 이전 인증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해 평가한 사례는 아직 없음.
-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위원 수당 등 회의체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로 구성되어 있음.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산출 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일반수용비(210-01): 19,000천원 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체 운영 (19,000천원) · 세부산출 : 12회×1,583천원=19,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20,000천원 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체 운영 (20,000천원) · 세부산출 : 5회×4,000천원=20,000천원
○ 임차료(210-07): 16,000천원 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장소 임차 (16,000천원) · 세부산출 : 4회×4,000천원=16,000천원	○ 임차료(210-07): 5,000천원 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장소 임차 (5,000천원) · 세부산출 : 5회×1,000천원=5,000천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17) 2024년 1월 30일 최초 구성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1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학계 2명, 법조계 3명, 산업계 2명, 시민단체 2명, 기타(한국인터넷진흥원) 1명

□ 그런데 2024년 1월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2024년 3회, 2025년 1회로, 총 4회이며, 2024년에는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사에서, 2025년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였음. 즉, 그간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하여 외부 회의장소를 임차한 사례가 없음.

〈국외이전전문위원회 2024년 및 2025년 회의 개최 실적 및 장소〉

일시	장소	주요 안건
2024. 1.	개인정보위 청사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및 운영세칙 의결
2024. 10.	개인정보위 청사	유럽연합(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여부 중간 평가
2024. 11.	개인정보위 청사	유럽연합(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평가 의결
2025. 7.	서면	유럽연합(EU) 동등성 인정 검토 보고서에 대한 서면 검토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2026년에도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장소 임차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년간 외부 회의장소를 임차한 실적이 없고, 해당 회의를 특정 일자에 개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호위원회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료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보호위원회는 2026년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체를 약 5차례 운영할 것은 기준으로 회의체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5번의 회의를 모두 외부 회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4.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¹⁸⁾: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의 사전 준비 철저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가명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 등 제도 운영, 가명정보 처리 및 안전성 검증,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9,200만원(81.1%) 증가한 64억 5,6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3,328	3,564	6,456	2,892	81.1
- 가명정보 제도운영	391	314	314	-	-
-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 운영	2,537	2,214	5,742	3,528	159.3
- 가명정보 활용 지원 시스템 운영	400	1,036	400	△636	△61.4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크게 내역사업 ‘가명정보 제도운영’,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 운영’ 및 ‘가명정보 활용 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구분되며, 동 사업 예산은 전액 사업출연금(350-02) 형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되어 집행됨.

18) 세부사업: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

- ‘가명정보 제도운영’ 사업은 가명정보 활용 실태 모니터링,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점검·운영, 가명정보 관련 제도개선 연구 등을 위한 사업이고,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 운영’ 사업은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운영 등을 위한 사업이며,
‘가명정보 활용 지원 시스템 운영’ 사업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임.

2) 검토의견

(1)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의 사전 준비 철저 필요

- 보호위원회는 내역사업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 운영’의 일환으로 2026년도부터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인데, 해당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처리 역량 부족에 대응하여 가명정보 제공 전(全) 과정을 공신력과 전문성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임.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추진체계(안)>



- 최근 AI 발전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위한 역량은 부족하여 외부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 실제로 가명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사례가 저조한 실정이고¹⁹⁾, 가명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장기화²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19) 「2024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보호위, 국가승인통계)

▶ 전체 797개 기관 중 최근 1년 내 가명정보 제공 경험 있는 기관은 18개뿐(2.3%)
▶ (주요 애로사항) 기술지원 부족(60.3%), 전문인력 부족(56.8%), 예산 부족(41.2%)

- 이에 보호위원회는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가명처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제공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전문기관에 보호위원회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가명처리에 소요되는 처리기간 및 행정부담 축소를 도모하고자 함.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 주요내용〉

구분	내용
운영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명처리 전문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업무위탁 (예산 출연)
지원 서비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제공하기 위한 전(全) 과정 지원 ① 가명·익명처리 : 공공데이터를 위탁받아 직접 가명(익명)처리 수행 ② 적정성 평가 : 안전하게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적정성 평가 수행
지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총 797개)
지원 절차	공공기관에 가명정보 제공 요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량이 부족한 공공기관에 전문기관을 통해 원스톱 지원

가명정보 수요자	공공기관	가명처리 전문기관
1) 공공기관에 가명정보 제공 요청	⇒ 2) 개인정보위(전문기관)에 원스톱 지원 요청	⇒ 3) 활용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 가명처리 수행
		↓
6) 가명정보 제공받아 필요 목적 (통계,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	⇐ 5) 인증 완료된 가명정보를 수요자에 제공 승인	⇐ 4) 가명처리가 잘 되었는지 적정성 평가 수행, 반출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시 소요되는 기간: 건당 평균 310일
(보호위원회, 2021~2024년 가명정보 처리 컨설팅 사례 분석결과)

□ 다만,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외부기관 위탁·출연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2조²¹⁾에 따라 법률상 출연 근거가 필요한데, 현행법상으로는 가명정보 처리 지원 사무에 대한 출연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보호위원회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는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상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와 같이 개별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보호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업무의 위탁 및 출연의 근거 역시 미흡한 상황임.

〈보호위원회의 사무 위탁 및 출연 관련 근거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21)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업무의 위탁) ③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8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2. 법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3. 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4.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5.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6.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시행 지원
 8.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시행 지원
 9.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10.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11.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상담
 12.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13.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각 목 생략＞
-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 사업 추진 시 가명정보 처리 지원 업무를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위탁·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호위원회는 2026년도 원스톱 서비스 예산안 편성 시 5인의 가명처리 전문가 및 4인의 적정성 평가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간 총 3,280건의 가명처리 및 반출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해당 목표건수(3,280건)는 현재까지 가명정보 처리·제공 실적이 전무한 공공기관(656개²²⁾)이 공공기관 평가 시 반영되는 가명정보 등 관련 실적²³⁾ 일부를 달성하기 위한 가명처리 소요를 전문기관에서 위탁 수행한다고 전제하고 산출한 건수임.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 운영 예산 및 목표 처리건수〉

○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예산: 936,000천원

- 가명처리 : 5명×8,742천원×12월=524,500천원
- 적정성평가 : 4명×8,573천원×12월=411,500천원

※ 절차 : ①데이터 선별 → ②식별 위험성 검토 → ③가명처리 → ④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 ⑤반출

○ 연간 처리 목표건수: 3,280건으로 예상(656기관* x 5건**)

- * 2025년부터 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전체 797개 중 가명정보 처리·제공 경험이 전혀 없는 656개 공공기관이 새롭게 가명처리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 (2024년 개인정보 보호·활용조사-국가승인통계)

** 실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 가명정보 결합 건수 등을 감안한 가명처리 수요로 산정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²⁴⁾ 시 기관이 가명정보 등 관련 가점을 최대로 취득하려면 총 10건의 가명정보 제공 또는

22) 전체 대상기관(797): 중앙행정기관(51),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226), 시도교육청(17), 지정공공기관(327), 지방공기업(159)

23) 2025년부터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 포함(건당 1점, 총 10점) 보다 구체적으로, 만점인 10점을 획득하려면 공공기관 대상 5건, 민간 대상 5건을 제공·공유하여야 함.

24)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운영 개요

- (목적) 행정·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통해 관련 정책 개선 및 이행력 제고
- (법적근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21조

합성데이터 개방²⁵⁾을 수행하여야 하며, 2026년도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 예산안에는 지금까지 가명정보 처리·제공 실적이 없는 공공기관(656개)들이 기관당 평균 5건의 가명정보 처리를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액이 편성되었음.

○ 가명처리 제공 관련 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된 만큼 2026년도에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 활용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수요는 예산액 추계의 기반이 된 기존 처리 실적이 없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자체 처리 경험이 있는 기관들로부터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정된 서비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원스톱 서비스 개시 이전에 기관별 기존 가명정보 처리 실적, 자체 수행 역량, 데이터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별 신청 소요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업무가 해당 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 권한과 책임 하에 수행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

25) ▶제공: 특정 대상이나 조건에 맞는 대상에게만 데이터 전달

(대상) 공공데이터포털,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접수된 제공신청에 대한 처리권

▶개방: 국민 누구나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

▶가명정보: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으로 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합성데이터: 원천데이터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가진 가상데이터

반복적으로 보호위원회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동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처리 역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되, 개별 기관의 영구적인 의존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가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제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보호위원회는 2024년부터 내역사업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 운영’의 내내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²⁶⁾ 구축·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6년도 예산안에는 동 내내역사업에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28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7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관련 예산 산출근거>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10,000	○ 사업출연금(350-02) : 810,000천원 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운영 지원 : 810,000천원 = 370,000천원(구축지원) + 440,000천원(운영지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구축 및 운영 : 370,000천원 = 1개 기관×370,000천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지원 : 440,000천원 = 2개 기관×220,000천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시설 운영, 운영심사 등 지원	810,000	○ 사업출연금(350-02) : 3,702,000천원 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운영 지원 : 810,000천원 = 370,000천원(구축지원) + 440,000천원(운영지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구축 및 운영 : 370,000천원 = 1개 기관×370,000천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지원 : 440,000천원 = 2개 기관×220,000천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시설 운영, 운영심사 등 지원 나.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구축 : 2,892,000천원 = 604,000천원(클라우드 전환) + 2,288,000천원(허브 구축) · 클라우드 전환 지원 : 604,000천원 = 2개 기관×302,000천원 · 연계 허브 구축 : 2,288,000천원 = 1식×2,288,000천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란 제로트러스트²⁷⁾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환경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연구자 등이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환경적 안전성 강화 수준에 비례하여 가명처리 수준이 적정 수준으로 완화되

26) 2024년도 신규 편성 당시 명칭은 ‘개인정보 안심구역’이었으나, 2025년부터 명칭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으로 변경함.

27)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내부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과정 전체 검증은 목표로 하는 보안모델

고, 이노베이션 존 내에 보관·활용되는 가명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재사용이 가능하며²⁸⁾,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PET²⁹⁾)의 실증을 위하여 보호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전성 심의·검증³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보호위원회는 2026년도 상반기 중 공모방식으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지정하여 가명정보 이용계획·분석결과물 등에 대한 전문심의위원회 심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정된 기관 중 1곳에 대하여는 보안장비·인프라·SW 구축비, 담당인력 인건비 등 이노베이션 존 신규 구축에 필요한 예산 3억 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

- 또한 기존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 데이터안심구역³¹⁾,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부처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28) 기존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또는 제3자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에 보관·활용되고 있는 가명정보를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 내로 제공받아 다른 목적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

※ 전제조건: ❶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목적 내 활용, ❷ 원 보유기관과의 협의 ❸ 전문심의위원회 심의, ❹ (필요시) 처리 목적·환경에 따른 추가 가명처리

29)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차분프라이버시 기술 등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통칭함

30) 개별 신청 프로젝트 건마다 개인정보위가 직접 개인정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3~7인)를 구성하여 처리 목적·방법·위험성 등에 대해 심의한 뒤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해당 심의위원회의 반출심사를 받은 뒤 반출하게 됨.

31)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2021년 법적 근거 마련 이후 202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추진중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그런데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10월 기준 총 5개 기관이 이노베이션 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연말 추가 이용 계획이 있는 5건을 제외할 경우 2025년도 이노베이션 존 평균 이용실적은 기관당 약 2건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저조한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 및 운영 현황〉

구분	1차 지정		2차 지정		
	국립암센터	통계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더존비즈온	한국도로공사
유형	국비지원형	자체구축형	자체구축형	자체구축형	국비지원형
지정일	2023. 12. 27.	2023. 12. 27.	2024. 7. 2.	2024. 7. 2.	2024. 7. 2.
운영일	2024. 7. 12.	2024. 3. 28.	2024. 12. 17.	2024. 12. 31.	2025. 3. 10.
중점분야	보건의료	국가통계	사회복지	정밀의료	국토교통
위치	경기 고양	대전 서구	서울 광진	강원 춘천	경북 김천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이용 현황(2025년 10월 기준)〉

(단위: 건)

구분		국립암센터	통계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더존비즈온	한국도로공사	합계
24년	내부	4	-	-	-	-	4
	외부	-	1	-	-	-	1
		4	1	-	-	-	5
25년 8월	내부	4	-	-	-	2	6
	외부	1	(1)	2(1)	(3)	2	5(5)
		5	(1)	2(1)	(3)	4	11(5)

주) (): 연도 내 추가 이용 예정 건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년도 이노베이션 존 예산 신규 편성 당시 실시하였던 예상 수요기관 대상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총 5개 기관의 연간 예상 이용건수가 총 36건으로 기관당 연평균 7.2건에 이르렀으나, 사업 개시 이후 실제 이용신청 건수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³²⁾ 지정신청 예상 수요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³³⁾〉

구분	공적기관			민간기업	
	국립암센터	통계청	NIA	SK주식회사	LG CNS
연간 예상 이용건수	15건	6건	6건	6건	3건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특히, 이노베이션 존으로 지정된 기관 중 통계청과 더온비즈온의 경우 2025년 10월 현재까지 2025년도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들의 이용실적이 2026년도 상반기 중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보호위원회는 이노베이션 존 지정 해지³⁴⁾를 포함하여

32) 수요조사 당시 공식명칭은 ‘개인정보 안심구역’이었음.

33) 2023. 9. 6.~2023. 10. 3. 실시

34)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 준비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p.29

□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이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음
 - 다만, 해지사유①과 해지사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하여야 함

□ 해지 사유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을 지정받은 경우
- ②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해산·폐업하는 등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 ③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 ⑤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이 이노베이션 존 운영을 위한 협약서 등을 위반하거나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 목적 달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보호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구축’ 예산 28억 9,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이노베이션 존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개별 운영중인 이노베이션 존 간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계 허브를 도입하려는 것임.

○ 해당 신규 정보화사업은 데이터 분석 환경의 효율성·접근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운영중인 이노베이션 존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구축 사업 예산(28억 9,200만원)이 연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구축 및 운영지원 예산(8억 1,000만원)의 약 3.5배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신규 투자에 대한 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³⁵⁾.

□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저조한 이용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신규 정보화 사업이 이노베이션 존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수요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투자 타당성·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35) 참고로 동 사업의 경우 정보화사업이기는 하나 연차별 시스템 구축 소요가 아닌 단순 기능개발, 단순물품(SW/HW) 구매 등 단년도에 종료되어 별도의 IS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인정되어 ISP 수립을 생략하였음.

-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가명정보 활용 수요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가명정보 결합·반출 등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가이드라인³⁶⁾을 수립·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6)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모델을 수립하여 가명처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 수수료 수입으로 가명처리 비용을 직접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가명정보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³⁷⁾: 타 사업과의 차별화 및 보호위원회 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사업은 개인정보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연구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운영, 산학연계 교과목 개설, 실습 등을 통하여 석·박사급 개인정보 보호·활용 인력 배출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3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	-	3,000	순증	순증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개인정보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내외 개인정보 산업을 육성하고 개인정보 법·기술 정책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보호위원회는 2026년도 30억원, 2027~2030년도 각 연 40억원의 예산액 확보를 계획하고 있음.

37) 세부사업: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1033-309)

○ 기존에는 교육부의 “혁신인재양성” 사업³⁸⁾³⁹⁾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 대학 학부과정 신설을 지원하였으나, 2025년 2월부로 해당 재정 지원은 종료되었음.

- 이후 대부분의 대학에서 해당 전공을 유지·운영하고 있음⁴⁰⁾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판단 하에 기 양성된 학부 인력을 석·박사급 전문인력으로 연계·발전시키기 위해 동 신규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보임.

〈교육부 혁신인재양성 사업 지원으로 개설된 개인정보보호 학부과정 현황〉

구 분	대상 학교명	25학년도(2025. 3.~)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과 및 전공명 현황
1기 (2022. ~2025. 2.)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개인정보보호 전공
2기 (2023. ~2025. 2.)	고려대	개인정보보호융합전공(마이크로디그리)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개인정보보호 마이크로 전공
	중앙대, 한라대(권소시업)	융합보안학과 개인정보보호 전공
		AI정보보안학과 개인정보보호 전공
	강원대, 강릉원주대(권소시업)	사이버보안학과(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융합보안학과 內 개인정보보호 가상학과(석사)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8) 개인정보 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교육부) 개요

- ◆ (목적) 산업·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분야 대학 특성화 지원(2024년 25억원)
- ◆ (기간) 2022.3.~2025.2.(3년)
- ◆ (대상) 국내 4년제 대학 중 총 5개교(서울여대, 강원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 ◆ (내용) 전공개설, 교과개발, 글로벌 인재양성, 실습환경 및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및 취·창업 역량 강화

39) 혁신인재양성 사업은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기간(3년) 종료 후 2025년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으로 개편되었음.

40) - 서울여대는 부·복수 전공 형태로 개인정보 보호 학과 지속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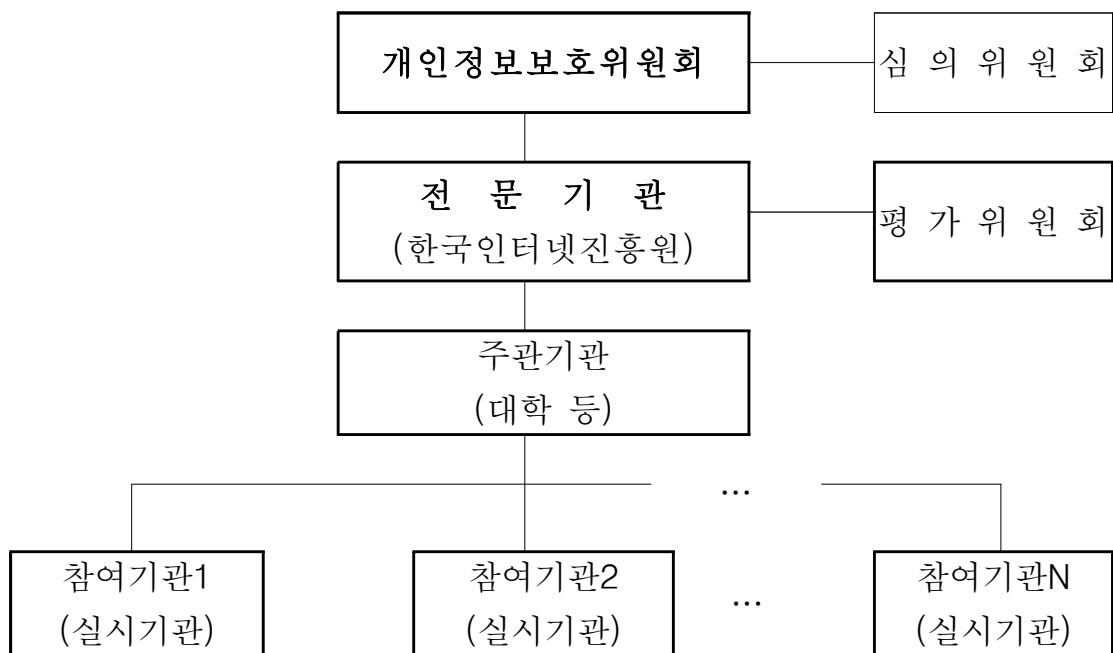
- 한라대는 정부지원 종료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과정 운영 종료

- 강원대는 교육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으로 대체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 영역으로 개인정보 보호 과정 명맥 유지

-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는 기 개설된 과정은 우선 운영할 계획

- 사업 예산은 전액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출연금 형태로 집행될 예정이며, 진흥원이 개인정보 보호·활용 석·박사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 2개교를 공모·선정하여 관련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계획임.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사업 추진체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 연구기획보고서)

2) 검토의견

□ 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개인정보 강화 기술(PET) 개발 및 표준 선점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인력 양성은 학부 수준의 기초 교육 및 재직자 교육에 머물러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 특히, 과징금 처분 기준 강화⁴¹⁾,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자격요건 법제화⁴²⁾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 이슈 등으로 인해 공공·민간 부문 전반에서 법률·기술·경영 지식을 아우르는 융합형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 과제가 됨에 따라 인공지능, 가명·익명처리 등 신기술 환경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동 R&D 사업은 정부 주도로 안정적인 석·박사급 개인정보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회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동 사업을 신규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 3.): 과징금 부과금액 상한 기준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기준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함.

4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024. 3.):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경력, 정보 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를 CPO로 지정하여야 함.

□ 먼저, 동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R&D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데이터 보호, 네트워크 보안 등 정보보안기술을 포괄하는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호위원회는 본 사업만의 특화된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차별화된 교과목 발굴을 위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⁴³⁾.

○ 참고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⁴⁴⁾” 사업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산학협력 기반의 국내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부과정 교육기반 강화 및 직무중심⁴⁵⁾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디지털선도기술핵심인재양성(R&D)⁴⁶⁾” 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대학, 기업, 지역 등이 연계하여 융합인재, 지역인재, 글로벌인재 등 ICT 유망·핵심 기술 분야의 석·박사 핵심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으로, 내역사업

43) 동 사업의 사전기획보고서(보호위원회 연구용역, 2025. 5.)에서도 타 부처에서 유사 사업을 이미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으로서의 추진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지원 범위 중 데이터보안, AI보안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범위와의 중복성이 우려되므로 개인정보 보호 분야 내 법·제도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사전 컨설팅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44) 정보통신진흥기금 -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2333-308)

45) <직무별 특성화 목표(택 1)>

특성화 목표	주요/연관 직업명
① 정보보호관리·운영	보안시스템·정책 관리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② 보안사고분석대응	침해대응 전문가, 침해사고 분석가, 보안관제 등
③ 보안SW개발	보안SW개발자, 보안엔지니어링 등

46)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디지털선도기술핵심인재양성(R&D)(2133-301)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을 통해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공 과정(학부 및 석사)은 고려대학교 등 5개 대학에만 개설되어 있는 반면 일반 정보보안·보호 관련 전공 과정은 이미 고려대학교·성균관대학교 등 수십 여개의 대학에서 운영 중인 상황인데, 보호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일반대학원을 설립하는 것 외에도, 기존 정보보안 관련 학과·전공 내 개인정보 보호 교과과정을 심화·발전시키는 방안의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교·검토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음.

〈2025년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과 개설 현황〉

학교명	학과/전공명	비고
고려대학교	개인정보보호대학원(특수대학원)	석사
	개인정보보호융합전공(마이크로디그리)	학부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개인정보보호 전공	석사
서울여자대학교	지능정보보호학부 개인정보보호 전공	학부
한라대학교	AI정보보안학과 개인정보보호 전공	학부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개인정보보호 마이크로 전공	학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참고로 현재 정보보호 대학원에서도 개인정보보호정책, 암호화 기술·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과목과 일부 부분이 중복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개인정보 교육과정과 정보보호 대학원 교과목간 비교〉

	개인정보 교육과정 필수 교과목 ¹⁾	정보보호 대학원 내 개인정보 관련 교과목 ²⁾
법령 관련	①개인정보보호법, ②신용정보보호법, ③해외 법제도(GDPR 등)	정보보호법제, 사이버법률, 법률과 정책론, 개인정보보호정책
제도 관련	④개인정보보호제도 (관리수준진단, 상시평가제), ⑤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⑥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지침, 내부관리계획), ⑦ISMS-P 인증제	정보보호이론, 정보보호정책, 정보보호 관리, 정보보호 개론, 정보보호컨설팅, 정보체계론, 암호수학 등
기술 관련	⑧가명/익명정보 기술	-
	⑨영상정보처리기술	-
	⑩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보안공학, 접근제어, 위험관리
	⑪개인정보 암호화 기술	현대 암호학, IT 융합 보안, 전자서명
	⑫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기술	-
	⑬차세대 개인정보보호기술 * AI, 생체정보, 위치정보, 클라우드 등 신기술별 보호대책	생체인증, 프라이버시 향상기술 등
	-	정보보호 기술개론

주1) 개인정보위 연구용역 결과(2021) 도출된 13개 필수 과목(CPO 등 실무자용)

주2)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2023) 교과목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목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 연구기획보고서)

-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동 사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는 석·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졸업과 동시에 관리자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 등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학위 과정과 취업을 직접 연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동 R&D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배분계획에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 예산은 보호위원회의 일반예산 사업인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당 예산을 일반예산 사업과 R&D 사업에 각각 편성하여 추진할 경우 사업간 집행 및 성과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 연도별 사업비 세부 배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인건비	390	540	540	600	600
커리큘럼 개발 운영	130	200	200	230	230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행	0	350	500	500	500
시설 개선비	300	300	200	200	200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	400	200	150	60	60
국제화 프로그램	80	150	150	150	150
사업운영비(간접비)	140	180	180	180	180
합 계	1,440	1,920	1,920	1,920	1,92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년도 동 사업 예산안에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 관련 예산 총 4억원(=2억원×2개교)이 반영되어 있는데, 학교 시설 내 운영되는 이노베이션 존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기관별로 운영되는 이노베이션 존을 별개의 사업을 통해 별도로 추진하게 될 경우 사업 중간점검, 최종 성과평가 등 사업 관리 측면 및 클라우드 및 연계허브 구축 등 관련 시스템 운영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간 연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⁴⁷⁾.

47) 참고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의 담당부서는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 추가적으로, 보호위원회는 학교 내 이노베이션 존 이용대상자를 해당 대학 학생으로 한정할지, 기존 이노베이션 존과 같이 기업·연구자 등 일반을 대상으로 확대할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차년도에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 결론적으로, 보호위원회는 동 신규 R&D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인재양성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일반 정보보안·보호 교과목의 심화·발전 가능성 검토 등 동 사업의 고유한 영역 확보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특화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보호위원회 소관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통해 사업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음.